표준번호

RM-I-1006

# EHSQ 수칙관리 지침서 ISO 9001/14001/45001 (자원관리)





# EHSQ 수칙관리 지침서

# 자 원 관 리

표준번호	RM-1-1006		
제정일자	2002.06.28		
개정번호	11		
페 이 지	1/56		

# - 목 차 -

- 1. 목 적
- 2. 적용범위
- 3. 용어의 정의
- 4. 책임과 권한
- 5. 자원과 정보
- 6. 제·개정 업무절차
- 7. 모니터링 및 측정
- 8.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
- 9. 안전수칙의 개정
- 10. 기록 및 보존
- 11. 관련문서
- 12. 첨 부

구	분	부 서 명	직 위	성 명	개 정 일 자
승	인	안전품질처	처 장	최 형 기	
검	토	재난안전부	부 장	이 동 렬	2020. 12. 17
작	성	재난안전부	과 장	김 복 용	

# 1. 목 적

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'공사'라 한다.) 전·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EHSQ(안전·보건·환경·품질) 준수사항을 정하고, 위험요소를 규명, 통제함으로써 작업 및 제반업무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.

개정 : 2020.12.17

# 2. 적용범위

작업 현장(경상정비, 대외공사, 사무실 등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곳을 포함)에 관계되는 전 직원, 협력업체 직원 및 방문객 등 모두는 EHSQ 수칙 이행 대상에 적용된다.

# 3. 용어의 정의

3.1 EHSQ(안전·보건·환경·품질)수칙

우리공사 역무와 관련하여 현장의 출입 또는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·보건· 환경·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말한다.

3.2 작업감독 및 공사감독자

작업개시 전 현장에 입회하여 작업허가 승인 여부, 작업 준비상태 및 작업 중 작업허가서의 안전 요구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, 당일 작업 종료 시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작업종료를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.

3.3 방문객

직접적인 작업 이외의 점검, 업무협의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를 말한다.

#### 4. 책임과 권한

- 4.1 EHSQ 주관부서장(안전품질처장)
  - 4.1.1 EHSQ(안전·보건·환경·품질) 수칙내용을 검토하고 제·개정 한다.
  - 4.1.2 각 현장에서 제시한 EHSQ(안전·보건·환경·품질) 수칙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제·개정 여부를 결정한다.
  - 4.1.3 EHSQ(안전·보건·환경·품질) 수칙은 작업안전분석(JSA) 및 위험성평가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4.2 EHSQ 관리책임자(지사장)
  - 4.2.1 운용중인 EHSQ 수칙의 현장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, 각 현장에 필요한 EHSQ 수칙을 개발하여 EHSQ 주관부서장(안전품질처장)에게 제·개정을 요청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- 4.2.2 EHSQ 수칙의 게시, 교육을 통해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이 준수하도록 한다.
- 4.2.3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EHSQ 수칙에 대한 준수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.
- 4.3 EHSQ 담당부서장(안전공무부(팀)장)
  - 4.3.1 각 현장에 필요한 EHSQ 수칙을 검토하여 개발하고, 각 단위업무 분야에서 개발된 수칙의 검토를 통해 EHSQ 수칙의 제·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.
  - 4.3.2 EHSQ 수칙을 필요장소에 게시하여 직원, 협력업체 직원, 방문객 등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- 4.3.3 EHSQ 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EHSQ 책임관리 절차서[MR-P-0503] 및 안전상벌제 운영 지침서[RM-I-1008]을 참고하여 안전경고장을 발부한다.
  - 4.3.4 EHSQ 교육훈련 절차에 따라 EHSQ 수칙에 대한 교육을 연간계획에 반영하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.
  - 4.3.5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하여 EHSQ 수칙의 현장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4.4 EHSQ 수행부서장(지사 부서장)
  - 4.4.1 직원,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EHSQ 수칙을 부서별 직무교육, 각종 공사 착공 전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육하여야 하며,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EHSQ 수칙의 현장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4.4.2 작업안전분석(JSA) 내용, 작업 또는 정비절차의 내용분석을 통해 필요한 EHSQ 수칙을 개발하여 EHSQ 담당부서장(안전공무부(팀)장)에게 송부한다.

RM-I-1006 3 / 56 안전품질처

4.5 전 직원

역무 수행 시 EHSQ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EHSQ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협력 업체 직원 및 방문객을 발견 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#### 5. 자원과 정보

5.1 인적자원

EHSQ 수칙의 제·개정을 위한 검토 시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 5.2 물적자원

- 5.2.1 EHSQ 수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최신 내용이 반영되어 활용되어야 한다.
- 5.2.2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, 작업안전분석(JSA) 및 위험성평가 결과, 작업절차 또는 표준정비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.

# 6. 제·개정 업무절차

- 6.1 EHSQ 수칙 규명
  - 6.1.1 EHSQ 주관부서장(안전품질처장은)은 지사 및 각 현장 등에서 필요한 EHSQ 수칙을 파악하여야 하며, 필요시 EHSQ 관리책임자(지사장)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6.1.2 EHSQ 관리책임자(지사장)는 EHSQ 주관부서장(안전품질처장)의 요청 시 필요한 EHSQ 수칙을 검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.
  - 6.1.3 지사 및 각 현장 등에서 현장통제를 위해 필요한 출입, 차량 운행 등의 기본 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.
  - 6.1.4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작업의 종류가 파악되어야 한다.

6.1.5 취급, 저장 및 사용되는 모든 유해 또는 위험물질의 종류가 파악되어야 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### 6.2 검 토

- 6.2.1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EHSQ 관련 법령의 요구 사항과 표준작업 지침이 검토되어야 한다.
- 6.2.2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, 작업안전분석(JSA) 결과 및 위험성평가 결과와 작업의 종류에 따른 작업 또는 정비절차의 반영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.
- 6.2.3 과거에 발생된 사고 및 작업안전 개선사례의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.

# 6.3 제·개정

- 6.3.1 EHSQ 주관부서장(안전품질처장)은 필요한 수칙이 규명되면 개정을 위해 수칙을 개발하여야 한다.
- 6.3.2 EHSQ 관리책임자(지사장)는 현장내 위험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칙을 개발하여 안전품질처장(EHSQ 주관부서장)에게 수칙의 제·개정을 요청한다.
- 6.3.3 EHSQ 주관부서장(안전품질처장)은 개발된 EHSQ 수칙의 제·개정 시 각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반영하여야 한다.
- 6.3.4 특정 현장에 국한하여 필요한 EHSQ 수칙은 해당 현장의 EHSQ 관리책임자 (지사장)가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# 6.4 교 육

- 6.4.1 EHSQ 담당부서장(안전공무부(팀)장)은 연간 EHSQ 교육계획 수립 시 EHSQ 수칙을 반영하여 교육하여야 한다.
- 6.4.2 EHSQ 담당부서장(안전공무부(팀)장)은 제·개정된 EHSQ 수칙을 게시 및 전파하여야 한다.

RM-I-1006 5 / 56 안전품질처

- 6.4.3 EHSQ 수행부서장(각 부서장)은 제·개정된 EHSQ 수칙을 즉시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교육하여야 한다.
- 6.4.4 EHSQ 수칙은 정기 및 특별안전·보건교육, 부서별 EHSQ 교육, 각종 공사 착공 전 안전교육 등을 통해 직원.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교육되어야 한다.

# 7. 모니터링 및 측정

- 7.1 EHSQ 담당부서장(안전공무부(팀)장) 및 EHSQ 수행부서장(각 부서장)은 EHSQ 수칙의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.
- 7.2 안전관리자, 감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감독자 등은 작업의 입회 시 작업과 관련된 EHSQ 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, 미준수시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# 8.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

각 현장 안전공무부·팀장(EHSQ 담당부서장)은 EHSQ 수칙 미준수자에 대해 EHSQ 책임관리 절차서[MR-P-0503] 및 안전 상벌제운영 지침서[RM-I-1008]을 참고하여 안전경고장을 발부하고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.

# 9. 안전수칙의 개정

EHSQ 담당부서장(안전공무부(팀)장)은 안전수칙을 연 1회 검토하고 필요시 위험성평가(작업안전분석)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EHSQ 주관부서장(안전품질처장)에게 절차 및 수칙의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#### 10. 기록 및 보존

EHSQ 주관부서장(안전품질처장)은 EHSQ 수칙의 정기적인 검토 내용을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

#### 11. 관련문서

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HSQ 책임관리 절차서 안전상벌제 운영 지침서

[ MR-P-0503 ]

개정 : 2020.12.17

[ RM-I-1008 ]

# 12. 첨 부

- 12.1 별 표
  - 12.1.1 EHSQ 안전수칙

별표 : EHSQ 안전수칙

# EHSQ(안전·보건·환경·품질)수칙

- 1. 일반 안전수칙
- 2. 정리정돈 안전수칙
- 3. 차량운행 안전수칙
- 4. 고소작업 안전수칙
- 5. 중량물취급 안전수칙
- 6. 밀폐공간(산소결핍장소)의 안전수칙
- 7. 화재예방 안전수칙
- 8. 용접작업 안전수칙
- 9. 수. 배전반 전기작업 안전수칙
- 10. 활관(Hot Tapping)작업 안전수칙
- 11. 가스용기 저장(취급) 안전수칙
- 12. 액화천연가스(LNG) 취급 안전수칙
- 13. 위험물 취급(보관) 안전수칙
- 14. 위험기계기구 취급 안전수칙
- 15. 유기용제 취급 안전수칙
- 16. 도장작업 안전수칙
- 17. 화약류관리 안전수칙
- 18. 토목 작업관리 안전수칙
- 19. 건축 작업관리 안전수칙
- 20. 작업 공통 안전수칙
- 21. 굴착공사 현장 안전수칙
- 22. 공작동내 작업 안전수칙
- 23. 작업용 가스 사용자 안전수칙
- 24. 유해물질 취급 안전수칙
- 25. 도로부 점검 안전수칙
- 26. 고속절단기 작업 안전수칙
- 27. 방문객 안전수칙

# 1. 일반 안전수칙

- 1.1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위(장난, 싸움 등)를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되며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.
- 1.2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계단 측면의 손잡이를 사용한다.
- 1.3 사전승인 없이 가스설비에의 무단접근, 조작, 운전을 금한다. (예외 : 비상사태시)
- 1.4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화기취급(흡연 및 화기사용)을 절대 금한다.
- 1.5 위험시설물(지역) 주변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, 무단출입을 금한다.
- 1.6 높은 곳에 오르거나 작업할 때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.
- 1.7 소음이 85 dB 이상인 곳에서는 청각 보호장비(귀마개, 귀덮개 등)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1.8 누출을 막거나,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람이 직접 누출된 LNG Pool이나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운(雲) 속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.
- 1.9 가스를 취급하는 등 화재·폭발의 위험이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(휴대폰, 노트북, 카메라, 캠코더, PDA, MP3 등 리튬 이온전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사용을 제한한다.
  - 가스설비로부터 1.5m 이내 지역은 사용금지
  - 가스설비로부터 7.5m 이내 지역은 사용주의
  - 허가된 지역외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시 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.



- 1.10 KOGAS-Tech 10대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한다.
  - 1.10.1 추락방지(2m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대 책용 등의 추락방지 조치 시행)
  - 1.10.2 개인보호구 착용(작업현장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바르게 착용)
  - 1.10.3 밀폐공간 안전확보(밀폐공간 출입 전 유해가스, 산소농도 등의 질식위험 점검)
  - 1.10.4 작업절차 준수(작업안전분석(JSA), 작업전 안전회의(TBM), 위험성평가 등 작업절차 준수)
  - 1.10.5 가스농도 측정(작업전·중 주변 지역 가스농도 측정)
  - 1.10.6 중량물 취급주의(중량물 취급시 추락, 전도, 충돌방지조치 시행 및 하방 접근 금지)
  - 1.10.7 차량 안전운전(안전벨트 착용, 전방주시, 방어운전 실시, 운전중 류 대전화 사용금지, 음주·졸음 운전금지)
  - 1.10.8 작업전·중·후 안전점검(작업전·중·후 작업발판, 비계, 안전난간의 고 정상태 점검 및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)
  - 1.10.9 활선·정전 여부 점검(전기설비 작업 전, 활선 및 정전 여부를 확인· 점검)
  - 1.10.10 동력장비 접근금지(움직이는 장비, 회전기기 등 동력장비 작동 시접근 금지)

# ● KOGAS-Tech 10대 기본안전수칙



#### 1. 추락방지

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 등의 추락방지 조치 시행



#### 6. 중량물 취급주의

중량물 취급 시 추락, 전도, 충돌 방지조치 시행 및 하방 접근 금지

777777

개정 : 2020.12.17



#### 2. 개인보호구 착용

작업현장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바르게 착용



#### 7. 차량 안전운전

안전밸트 착용, 전방주시, 방어운전 실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, 음주·졸음 운전금지



#### 3. 밀폐공간 안전확보

밀폐공간 출입 전 유해가스, 산소농도 등의 질식위험 점검



# 8. 작업 전·중·후 안전점검

작업 전·중·후 작업발판, 비계, 안전난간의 고정상태 점검 및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



#### 4. 작업 절차준수

작업안전분석(JSA), 작업전 안전회의(TBM), 위험성평가 등 작업절차 준수



# 9. 활선·정전 여부 점검

전기설비 작업 전, 활선 및 정전 여부를 확인·점검



#### 5. 가스농도 측정

작업 전·중 주변 지역 가스농도 측정



#### 10. 동력장비 접근금지

움직이는 장비, 회전기기 등 동력장비 작동 시 접근금지

# 2. 정리정돈 안전수칙

- 2.1 불필요한 자재나 못 쓰는 물건은 즉시 정리정돈 한다.
- 2.2 작업장 주위의 통로는 80cm 이상의 폭을 유지하여 표시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, 작업장내 바닥은 청소를 깨끗이 한다.
- 2.3 자재를 쌓는 경우에는 중량물에서 가벼운 것으로,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쌓는다.
- 2.4 품명 및 수량을 파악하기에 좋도록 정리한다.
- 2.5 구르기 쉬운 것은 받침대(쐐기)를 튼튼히 하고 묶어서 적재 또는 보관한다.
- 2.6 사용할 시기, 용도별, 품명 및 수량을 파악하기 좋도록 정리한다.
- 2.7 부식 및 발화나 가연성 또는 위험물질은 전열기 및 화기로부터 이격된 별도장소(위험물 보관창고 등)에 보관한다.
- 2.8 전기설비 주변에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.
- 2.9 작업에 필요한 수공구는 공구함을 준비하여 필요한 종류와 크기 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.
- 2.10 작업전 안전점검과 작업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.
- 2.11 도로, 통로, 입구, 계단, 복도 및 창고 등은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 되어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은 제거하여 안전통로를 확보해 야 한다.
- 2.12 작업에 사용후 남은 유해·위험물은 작업장과 별도로 지정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 두고 사용한다.
- 2.13 캐비넷, 선반 등에 물건 적재시 무거운 것은 아래쪽으로, 가벼운 것은 위쪽으로 정리하며, 제품 중량물별 취급주의표지를 부착한다.

# 3. 차량운행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 3.1 운행 전

- 3.1.1 운전시 당일 일기 및 노면상태 등을 미리 확인한다.
- 3.1.2 출발 전 차량의 전 · 후 및 측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.
- 3.1.3 타이어 및 제동장치, 각종 표시계기 등을 점검하고, 고장 표지판, 스페어 타이어, 공구 등 차량용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.
- 3.1.4 차량탑승시 운전자 및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.
- 3.1.5 운전자는 운행중에는 상시 전조등을 켜고 운행한다.
- 3.1.6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나 졸음운전, 과속, 과적운전을 금한다.
- 3.1.7 회사차량을 무단 운행하지 않으며, 업무와 관련 없는 외부인의 탑승을 금한다.

#### 3.2 운행 중

- 3.2.1 해당 규정속도 및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한다.
  - ※ 예시 : 생산기지(30km/hr), 관리소(10km/hr), CNG 충전소(10km/hr), 기타 공사시설(20km/hr) 등
- 3.2.2 약물, 음주 또는 무면허 자, 운전 제한연령(보험특약 조건) 미도달자는 운전을 할 수 없다.
- 3.2.3 차량 내에서의 흡연 및 화기취급을 금지하도록 한다.
- 3.2.4 차량 운전 중에는 휴대폰이나 무전기 사용은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동승자가 사용하도록 한다.
- 3.2.5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며,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추월을 금한다.
- 3.2.6 교차로 진입시에는 반드시 일단정지 후 좌우를 확인하고 서행 운전한다.
- 3.2.7 차량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선행시 항상 방향 및 제동표시를 한다.
- 3.2.8 안개, 우천, 폭설 등 기상 불량 시 감속 운행하고, 비상등을 점등한다.
- 3.2.9 후진운행시 경적을 울리고, 후방카메라(후사경)을 주시하여야 한다.
- 3.2.10 야간운전시 맞은편이나 앞에 차량이 주행할 경우에는 전조등을 하향으로 점등하고 운행하여야 한다.

- 3.2.11 도로에 차량 정차시 도로가에 이동 정차하고, 비상등을 점등한다.
- 3.2.12 운행중 차선변경 또는 방향전환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에 방향을 전환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- 3.2.13 운전자는 차량 이탈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확인한 후 차량 열쇠를 제거한다.
- 3.2.14 동승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금하고 주변 상황을 미리 파악, 인지하는 등 운전보조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### 3.3 기타 제한사항

- 3.3.1 공사시설내 차량 출입은 사전허가를 받고 출입해야 하며, 허가지역 이외의 출입은 금한다.
- 3.3.2 LNG 및 천연가스 설비지역내 출입차량은 허가된 차량으로서 배기구에 불꽃방지기를 장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, 적응능력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 단, 불꽃방지기는 내부에 차단용 금속판과 말단에 소염용 메쉬(고체 입자의 크기)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.
- 3.3.3 공사시설내 차량 적재 제한높이는 허용중량 이하로 준수하여야 한다.
- 3.3.4 시설내 주차는 해당부서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허용되며, 부서장이 지정한 경우 주차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.
- 3.3.5 화물적재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하며, 화물적재 칸에는 사람이 탑승하여서는 안 된다.
- 3.3.6 덤프트럭은 덤프를 올린 상태로 운행을 금지하며, 덤프 인양시 장애물 (전선. 고소시설물 등)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3.3.7 긴급자동차는 긴급 출동시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시키고 운행하며, 긴급 업무가 종료되거나 일상업무 수행시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을 제한하다.
- 3.3.8 중장비는 후면에 반사경 또는 반사띠를 부착하여 야간에도 원거리에서 식별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3.9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는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면허(2종 보통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정) 이상을 소지한 자로 하며,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전 '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'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3.3.10 제한구역내 유류 공급 등 위험물을 공급하기 위한 차량은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.
- 3.3.11 차량 주차시 소화전(소화설비)과 5m이상 거리를 두고 주, 정차한다.

# 4. 고소작업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 4.1 이동식사다리 작업 안전수칙

- 4.1.1 보통사다리(일자형 사다리), 신축형사다리,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사다리(A형)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한다.
- 4.1.2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고,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4.1.3 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
  - (1) 평탄 ·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한다.
  - (2) 경작업\*, 고소작업대·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한다. \* 경작업: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 전구교체, 평탄지역의 조경작업 등
  - (3) 사다리 작업높이가 1.2m이상 ~ 2m미만인 경우에는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며,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.
  - (4) 사다리 작업높이가 2m이상 ~ 3.5m이하인 경우에는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를 착용하며,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을 금지한다.
  - (5) 사다리 최대길이가 3.5m초과한 경우 작업발판으로 사용을 금지한다.



# 4.2 이동식 비계작업 안전수칙

- 4.2.1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자재를 적재하지 않는다.
- 4.2.2 승강설비, 안전난간, 작업발판, 바퀴 구름방지장치 등 안전설비를 반드시 안전기준에 의거 설치하도록 한다.
- 4.2.3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안전모, 안전화, <u>안전대</u>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- 4.2.4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.
- 4.2.5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지 않는다.
- 4.2.6 각 륜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 상태에 놓는다.
- 4.2.7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지 않는다.
- 4.2.8 승하강시에는 반드시 승강설비를 사용하며, 개폐형 발판(해치발판)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승강하도록 한다.
- 4.2.9 안전표지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안전표지에는 최대적재하중 및 사용 책임자를 명시한다.

#### 4.3 철골작업 안전수칙

- 4.3.1 공중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철저히 착용하고 작업한다.
- 4.3.2 철골작업자는 안전모,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.
- 4.3.3 안전대 지지로프는 부재와 함께 인양하여 부재의 가조립과 동시에 설치한다.
- 4.3.4 철골에 사다리, 트랩 등 수직승강용 통로를 우선적으로 설치, 확보한다.
- 4.3.5 작업발판은 가능한 한 부재를 양중하기 전에 지상에서 부착시킨다.
- 4.3.6 추락방지 설비로 방망이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.
- 4.3.7 작업구역내에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하지 않으며 양중하는 부재의 아래 및 중기의 회전반경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.
- 4.3.8 재료. 기구. 공구 등의 수직운반은 달줄. 달포대 등을 사용한다.
- 4.3.9 차량의 반 출입 때는 유도를 확실히 하고 제3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.
- 4.3.10 철골부재를 인양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한다.
- 4.3.11 강풍, 우천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.

# 5. 중량물취급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 5.1 중량물 운반작업 안전수칙

- 5.1.1 작업전에 허리를 중심으로 가벼운 운동을 실시하여 근육을 풀어준다.
- 5.1.2 작업전에 통로상의 장애요소(노면 매임, 돌, 못 튀어나옴, 미끄럼 등)를 제거한다.
- 5.1.3 작업할 때는 규정에 맞는 작업복 및 보호구를 몸에 밀착되게 착용한다.
- 5.1.4 운반중량은 작업조건, 화물의 형상 및 성상, 작업자의 성별, 연령 등 제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한다.
- 5.1.5 중량물을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대상물체를 가볍게 움직여 본 후 운반하도록 한다.
- 5.1.6 화물의 특성(유해·위험성, 무게중심, 유동성)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다.
- 5.1.7 화물을 쥐는 방법 등 운반하는 자세 및 순서를 충분히 훈련하여 몸에 베도록 한다.
- 5.1.8 혼자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 2인 이상이거나 운반보조기구를 활용한다.
- 5.1.9 여러 명이 협동 운반할 경우에는 구호(구령)자 지정 및 작업환경에 알 맞은 신호방법을 정하고 반드시 지킨다.

## 5.2 인력 운반작업 안전수칙

- 5.2.1 화물의 크기와 무게를 사전 확인한다.
- 5.2.2 몸은 화물 가까이에 위치시킨다.
- 5.2.3 허리를 굽히지 않고 중심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리의 힘으로 일어선다.
- 5.2.4 운반도중 잡은 손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다.
- 5.2.5 크거나 무거운 화물 운반 시에는 동료의 협조를 받는다.
- 5.2.6 화물을 내려놓을 때는 한쪽 귀퉁이를 놓은 다음 손을 살며시 뗀다.
- 5.2.7 힘에 겨운 화물을 무리하게 운반하지 않는다.
- 5.2.8 2인 이상 운반 시에는 취급방법을 먼저 협의한다.

- 5.3 줄걸이 작업 안전수칙
  - 5.3.1 줄걸이 용구 및 달기기구의 재질 및 강도는 화물의 형상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사용이 용이하고, 충분한 내구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.

- 5.3.2 달기기구에는 정격하중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, 균열, 변형 및 볼트, 너트 등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다.
- 5.3.3 H-Beam, 철판 등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전용 운반구를 사용한다.
- 5.3.4 철근, 파이프 등 긴 자재운반 보조용 달기기구는 본체에 길이 및 폭 조정용 가이드를 설치하여 운반물의 치수에 따라 줄걸이 길이 및 폭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.
- 5.3.5 철판 등에 러그(Lug) 설치시 러그(Lug)는 용접길이 부족에 의해 운반 중량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러그(Lug)가 탈락·낙하하는 위험이 없도록 러그 접촉부위가 완전 용입되도록 용접을 실시한다.
- 5.3.6 달기용 후크(Hook) 사용할 때에는 기계가공, 용접, 열처리, 후크해지 장치의 제거 등을 해서는 안된다.
- 5.3.7 와이어 로프 등 달기기구의 안전계수는 아래와 같다.
  - (1)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: 10 이상
  - (2)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: 5 이상
  - (3) 훅(Hook), 샤클(Shackle), 클램프(Clamp), 리프팅 빔의 경우: 3 이상
  - (4) 기 밖의 경우: 4 이상
  - (5) 훅에 매다는 로프의 각도는 60°이하로 한다.
- 5.3.8 줄걸이 작업시 아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한다.
  - (1) 이음매가 있는 것
  - (2)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(필러선을 제외한다)의 수가 10% 이상 절단될 것
  - (3) 지름의 감소가 공칭기름의 7%를 초과하는 것
  - (4) 꼬인 것 및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
- 5.3.9 줄걸이 작업시 아래에 해당하는 체인의 사용을 금지한다.
  - (1)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%를 초과한 것
  - (2)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%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
  - (3)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

- 5.3.10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연결고정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정된 제품을 사용한다.
  - (1) 아이 스플라이스(Eye splice) 가공법 : 연결을 링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으로 와이어로프의 모든 스트랜드를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 스트랜드 소선의 절반을 절단하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

- (2) 소켓(Socket) 가공법 : 연결부에 금형 또는 소켓을 부착하여 용용 금속을 주입하여 고착
- (3) 록(Lock) 가공법 : 파이프형태의 슬립(Slip)에 와이어로프를 넣고 압착하여 고정
- (4) 클립(Clip) 체결법 : 클립의 새들(Saddle)은 와이어로프의 힘이 걸리는 쪽에 있어야 하며, 클립 수량과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. 수량은 최소 4개 이상일 것
- (5) 웨지(Wedge socket) 소켓법: 쐐기의 일종으로 쐐기에 로프를 감아 케이스에 밀어 넣어 결속하는 방법이며 비대칭 웨지 소켓법 (Asymmetric wedge socket)과 대칭 웨지 소켓법(Symmetric wedge socket)이 있다
- 5.3.11 줄걸이 작업시 아래에 해당하는 섬유벨트(슬링벨트)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폐기한다.
  - (1) 봉재선의 풀어진 길이가 벨트의 폭보다 클때
  - (2) 봉재선의 풀어진 길이가 봉재부 길이의 20%를 넘을 때
  - (3) 아이부의 봉재선이 풀어진 경우
  - (4) 표면이 털모양으로 일어난 경우
  - (5) 사용한계 표시(색상이 다른 실, 내부 또는 외부에 사용)부분의 노출 또는 손실이 있는 것
  - (6) 열이나 약품 등에 의해 현저한 변색, 착색, 용융, 용해 등이 확인된 것
  - (7) 옥내 사용의 경우 사용 개시 후 7년이 경과된 것과 옥외 사용의 경우 사용 개시 후 3년이 경과된 것
- 5.3.12 줄걸이 작업시 아래에 해당하는 섬유벨트(라운드 슬링벨트)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폐기한다.
  - (1) 아이부. 본체부분의 표피가 파손되어 심선이 노출된 경우
  - (2) 벨트의 접합부 또는 연결부 실밥이 풀려서 심선이 노출된 경우
  - (3) 열이나 약품 등에 의하여 심한 변색, 용융, 용해 등이 확인된 경우
  - (4) 심부나 부분적으로 뭉쳐서 두께의 불균일이 보일 경우

# 6. 밀폐공간(산소결핍장소)의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 6.1 용어의 정의

- 6.1.1 밀폐공간 : 산소결핍,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.
- 6.1.2 유해가스 :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·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중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
- 6.1.3 적정공기: 산소농도의 범위가 18% 이상 23.5% 미만, 탄산가스의 농도가 1.5% 미만,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.
- 6.1.4 산소결핍 :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%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.
- 6.1.5 산소결핍증 :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.

# 6.2 산소결핍의 위험성

- 6.2.1 재래형 재해인 산소결핍, 가스(CO, CO<sub>2</sub>, CH<sub>4</sub>, H<sub>2</sub>, H<sub>3</sub>S 등)에 의한 건강피해
  - (1) 오래된 동굴. 우물 등에서 주로 발생
  - (2) 최근에는 잠함, 기초갱, 청과물 저장소, 각종 탱크, 선창, 배관내부 등 통풍이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발생건수 증가 추세
- 6.2.2 산소결핍증 및 황화수소 중독은 지하철, 터널공사 등 지하작업장, 화학공업, 청소업 등 탱크내 작업시 발생
  - (1) 작업자의 인식부족, 환기조치 불충분, 작업관리 부적절 기인
- 6.2.3 산소결핍 사고의 사망위험이 가스중독증에 비해 높은 이유는 1명 사고 후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연속적인 재해를 입어 사망(대형재해)
- 6.2.4 황화수소(H<sub>S</sub>) 중독 주요 사례
  - (1) 화학공장, 건설업, 분뇨처리, 오수처리 작업장
- 6.21.5 메탄(CH<sub>4</sub>) 중독 주요 사례(중독 및 폭발)
  - (1) 폐기물 처리장, 하수도 맨홀, 광산의 갱내에서 많이 발생

#### 6.3 작업안전 수칙

- 6.3.1 작업 전 준수사항
  - (1)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교육 실시

개정 : 2020.12.17

- ①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
- ②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
- ③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
- ④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
- ⑤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
- (2) 출입전 환풍기 또는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환기
- (3) 출입전 가장 먼저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가연성 가스, 증기, 유독성 가스의 순서로 측정을 실시하며, 부득이하게 밀폐된 공간 내부에 출입하여 측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측 정을 실시(3개소 이상 반드시 실시)
- (4) 측정결과 밀폐된 공간의 산소 농도가 19.5% 이하 또는 23.5% 이상 인 경우에는 출입 및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.
- (5) 작업장의 공기가 적정공기일 때 작업자를 출입시키고 출입전 작업 자 인원 점검 반드시 실시
- (6) 작업전 관리감독자 반드시 지정

# 6.3.2 작업 중 준수사항

- (1) 작업중 환풍기 또는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수시 환기
- (2)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수시 측정(1시간 마다)
- (3) 안전작업절차 준수
- (4) 적합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착용하며, 필요시 안전대, 구명밧줄, 공기호흡기 등 필히 착용
- (5) 작업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, 출입금지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
- (6) 올바른 공구 및 장비 사용
  - ① 작업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것
  - ② 방폭공구 등
- (7)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한 필요한 기구를 작업장 외부에 비치

-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
  - 감시자는 응급구조 절차 숙지
  - 밀폐공간 내의 작업자와 무전기, 호루라기, 구명줄 등을 이용하여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

개정 : 2020.12.17

-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 이탈 금지
- 작업중 현기증 또는 가벼운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밖으로 대피
- 작업중 밀폐공간 내부에서 절대 금연

# 6.3.3 작업 후 준수사항

- 작업 종료 후 밀폐공간 외부로 퇴장 시 작업자 인원 점검 반드시 실시
- 사용한 작업 공구 및 장비 확인
- 작업자 중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이나 처치를 받도록 조치

# 6.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 유의사항

- 6.4.1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 구비
- 6.4.2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 유지
- 6.4.3 측정 장소와 측정시기를 정확히 정하고 측정 실시
- 6.4.4 측정자는 보호구 없이 측정하려고 하는 장소에 함부로 출입 금지
- 6.4.5 긴급사태 발생시 구조 및 통보 등이 필요하므로 필히 1인 이상의 보조자의 감시 하에 측정
- 6.4.6 깊은 곳을 측정 할 때는 로프를 이용하거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측정

# 7. 화재예방 안전수칙

- 7.1 현장의 전 설비지역 내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한다.
- 7.2 작업책임자는 위험지역 내에서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지 또는 규정된 복장인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7.3 위험지역 내에서의 작업은 사전에 허가된 것이며, 작업자는 작업시 위험 요소를 규명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7.4 소화기 배치 장소와 사용법 및 이상 유무를 항시 확인하고 점검표에 점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7.5 작업책임자는 비상시 작업자나 출입자가 대피할 수 있는 통행로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7.6 사용한 소방장비는 즉각 정비·정돈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7.7 전 직원은 소방장비의 위치를 숙지하고 사용방법을 익혀 두어야 한다.
- 7.8 소화기 등의 소방장비를 정위치에 두어야 하며 주위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 된다.
- 7.9 작업자는 소화기 위에 어떤 물건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화재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안전핀을 뽑아서는 안 된다.
- 7.10 작업자는 소화기를 사용하였거나 파손된 소방장비를 발견하였을 때는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7.11 작업자는 동절기에 소화전을 사용한 경우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소화전에 있는 물을 완전히 제거시켜야 한다.

# 8. 용접작업 안전수칙

- 8.1 용접작업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물기 있는 장갑, 작업복, 신발 등을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.
- 8.2 용접작업시 용접불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화상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, 안전장갑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.
- 8.3 누전 및 감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자동전격방지기 설치, 정상작동 여부 및 용접기 어스선의 접속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한다.
- 8.4 용접작업 중단시 감전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한다.
- 8.5 용접작업장 주변에 화재의 우려가 있는 가연성물질 및 기름, 도료, 헝겊 등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으며, 인화성/폭발성 물질을 격리시킨다.
- 8.6 용접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반드시 불꽃 비산방지조치를 실시를 하고, 화재감시자를 두며, 소화기를 비치한다.
- 8.7 작업이 중단될 때에는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토치 밸브와 실린더 밸브는 반드시 닫아둔다.
- 8.8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홀더는 커버가 파손되지 않은 것만 사용하고, 전압이 걸려있는 홀더에 용접봉을 끼운 채 방치하지 않는다.
- 8.9 탱크 등 좁은 공간에서 용접작업 시행 시 용접가스로 인한 인명사고를 방지 하기위해 환풍설비 또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체에 기대 지 않는다.
- 8.10 가스가 새는 실린더는 잠근 채로 발화의 위험이 없는 장소로 운반하여 천천히 가스를 빼내어야 한다.
- 8.11 용접중 감전사고 발생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.
  - 8.11.1 사고전원을 차단하고 사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구출한다.
  - 8.11.2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 실시와 동시에 119 등에 사고발생 신고를 한다.
  - 8.11.3 공사 재난관리 절차서의 보고체계에 따른 상황보고를 실시한다.
- 8.12 실내 또는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작업시 차광막을 설치한다.

# 9. 수 · 배전반 전기작업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### 9.1 작업 전

- 9.1.1 작업책임자(작업반장, 공사감독 등)를 지정한다.
- 9.1.2 지정된 작업책임자(협력업체 포함)는 작업 전체 절차(정전구간·범위, 차단기 위치, 조작 및 작업순서, 정전 및 작업시간, 단락접지 개소 등)를 숙지하고 작업에 필요한 사항(도면, 자재 서양서, 작업 전 안전회의록 등)을 준비한다.
  - ※ [수배전설비 관리기준 및 정밀진단 절차서 참고]
- 9.1.3 작업책임자는 작업통제 및 구획표지판(작업현장 안전띠 및 표지판 설치)을 확인하고, 미비된 사항은 즉각 조치한다.
  - ※ 비 점검 정비대상 판넬 구분을 위한 잠금 확인 및 위험테이프를 설치한다.
- 9.1.4 작업 전 안전회의(TBM)는 해당 작업자가 모두 참석한 작업현장에서 작업책임자 주도하에 반드시 실시한다.
  - ※ 작업내용·절차 및 순서·작업자의 건강상태·절연보호구·복장 등의 확인 및 착용·작업개소의 상황설명·작업예정 시간·작업 분담 및 배치·작업의 방법 및 순서 설명·작업 전반에 대해 공유·전파한다.
- 9.1.5 작업 전 안전회의(TBM)에서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해 조치하고, 그에 따른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해당 작업자를 상대로 실시한다.
- 9.1.6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에게 필요한 작업공구 및 안전보호구를 지급한다.
- 9.1.7 해당 작업자는 작업공구확인 및 안전보호구(절연안전모, 절연화, 절연고무장갑, 활선 접근경보기 등)를 반드시 착용하고, 2인 1조로 서로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한다.
- 9.1.8 작업 전 작업 주위 환경에 대한 청결 상태 및 안전 상태를 확인 점검한다.
  - ※ 정전 작업시의 조명 확보, 불필요한 물건, Cleaning 작업 전 물기 제거
- 9.1.9 작업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본인의 업무 내용 및 정비 안전 수칙을 숙지한다.
  - ※ 전력 계통상 부하 측 A/B Bus Tie-in 차단기를 통한 전력공급 상황 숙지

9.1.10 작업책임자는 정비작업 진행 중 차단기 조작금지를 위한 Red-Tag 부착 요청 및 하단 절판을 교부받아 작업종료 시까지 보관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- 9.1.11 작업자는 차단기 Draw-Out 상태와 Red-Tag 부착여부를 확인한다.
- 9.1.12 작업 전 대상 설비에 대한 Power Off 상태를 확인한다.
  - ※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반드시 절연고무장갑 착용 후 검전기를 이용하여 잔류 전압을 확인한다.
  - ※ 인입케이블·고압용·진상콘덴서의 잔류전하를 방전봉으로 각 상의 단자에 5초간 3회 접촉시켜 완전방전 실시
- 9.1.13 작업자는 개방된 전로의 가까운 장소에 단락접지용구를 설치하고, 단락 접지 표시를 설치한다.
  - ※ 수전측 주 차단기 2차 부하단 방전 실시 후 적절한 곳에 접지 용구 (3Φ공통접지용)를 활용하여 접지측 클램프 → 고압단자 순으로 접지 시행
- 9.1.14 작업구역 내 활선부분은 절연 방호 설치한다.
- 9.1.15 작업책임자는 오전/오후 작업 착수 전 매번 검전, 접지, 전력공급 상황 등을 확인한다.

# 9.2 작업 중

- 9.2.1 작업 중 작업현장에 모든 작업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작업 전 안전회의 (TBM), 작업안전분석(JSA), 작업허가서를 비치한다.
- 9.2.2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가 반드시 입회한다.
  - ※ 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부터 종료까지 현장 상주하여 작업 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.
- 9.2.3 배전반 내부 주요작업에 대한 트립에 관련된 사항(트립 소스, 판넬스위치, 기기 류 등)을 사전숙지 후 작업을 시행한다.
- 9.2.4 배전반 내부작업시 동절기 방한복, 개인보호구, 안전벨트 등이 배선 및 기기류 등, 특히 BUS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- 9.2.5 작업책임자는 작업자가 작업계획에 없던 작업을 임의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.
- 9.2.6 작업책임자는 개방된 차단기·단락접지용구·활선 절연방호 상태관리를 수시로 확인한다.

9.2.7 작업자는 작업 중 위험 상황이 인지됐을 경우 작업 중지를 작업책임자에게 요청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- 9.2.8 휴식 및 점심식사 후, 작업책임자는 작업 재개 전 작업자에게 다시 작업절차에 대해 공유·전파한다.
  - ※ 작업 내용 및 절차가 변경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작업자에게 변경 내용을 공유·전파한다.
- 9.2.9 설비 정비 완료 후 부하 측 마감상태를 확인한다.

#### 9.3 작업 후

- 9.3.1 작업책임자는 작업종료 후 작업대상 설비의 원상복구상태·작업인원 및 장비·공구 등의 수량을 확인한다.
- 9.3.2 운전원이 작업구간 통전을 위한 계통정상화 작업 중 차단기 Draw-in 및 조작시 입회하여 작업 완료구간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.
- 9.3.3 차단기 Draw-in 후 단계별 전원 투입에 있어 수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.
- 9.3.4 최종점검 완료 후 작업책임자는 운전원과 합동으로 작업완료 상태를 최종 확인한 후 Red-Tag 하단 절판을 운전원에게 반납한다.

# 10. 활관(Hot Tapping)작업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 10.1 활관작업이란?

가스, 유류, 증기 및 온수 등의 공급중단 없이 분기작업, 교체작업 및 보수작업 등을 위한 천공작업(Tapping) 또는 천공 및 차단작업(Plugging)을 말하며, 배관을 통하여 흐르는 가스나 유류 등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배관 교체나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Hot Tapping이라고 함

O Hot Tapping & Plugging 공법은 계통운전 중단없이 특수밸브인 샌드위치 (Sandwich) 밸브와 피팅(Fitting)을 이용하여 배관을 천공하는 Hot tapping 공법과 실링 엘리먼트(Sealing Element)를 장착한 Plugging을 이용하여, 배관이설공사를 포함한 일반 플랜트 설비에서 유체의 공급 중단없이 Tie-in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법

# 10.2 적용분야

구 분	분 야	응 용 분 야
1	도시가스분야	○ 천연가스 주배관 및 도시가스 공급배관 ○ 저장탱크의 인입 및 인출배관 신설
2	상수도분야	○ 광역, 일반 상수도 및 공업용수 배관 ○ 용수 저장탱크 인입 및 인출배관 신설
3	지역난방분야	○ 지역난방 배관 ○ 온수 저장탱크 인입 및 인출배관 신설
4	원유수송분야	○ 각종 유류 공급배관 ○ 각종 유류 저장탱크 인입 및 인출배관 신설
5	기 타	○ 이와 유사한 플랜트

# 10.3 장비 설치작업

- 10.3.1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.
- 10.3.2 중장비 작업시 작업반경 거리내 타작업 및 작업자를 통제한다.
- 10.3.3 중장비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.
- 10.3.4 비파괴검사 작업시(방사선관리 안전수칙에 따른다) 검사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- 10.3.5 배관 예열작업시 LPG 호스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죽장갑을 착용한다.
- 10.3.6 용접작업시(용접작업 안전수칙에 따른다) 용접발전기의 접지상태를 확인하고, 감전에 주의한다.

# 10.4 천공작업

- 10.4.1 배관 천공시 작업발판의 안전상태를 점검한다.
- 10.4.2 GAS VENT 전 작업사항을 주위에 알린다.
- 10.4.3 GAS VENT구 주위에 차량, 고압선 등 지장물은 없는지 확인한다.

# 10.5 장비 철거작업

- 10.5.1 취부, 취외시 손이 협착 될 위험성은 없는지 확인 후 작업을 한다.
- 10.5.2 중량물 이동(중량물작업 안전수칙에 따른다)시 장비 아래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한다.

# 11. 가스용기 저장(취급) 안전수칙

- 11.1 가스용기 취급시 전도, 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밸브 보호캡 및 전도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- 11.2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(산소 등)의 혼합저장 및 2종류 이상의 가연성 가스를 혼합 저장해서는 안 된다.
- 11.3 충전용기(실병)와 잔가스 용기(공병)는 가스 종류별로 구분 저장하여야 한다.
- 11.4 가스용기 저장소는 비,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불연성 재료로 차양 막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11.5 가스용기의 취급 및 불출 후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
- 11.6 가스용기 저장소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의 취급을 절대 금한다.
- 11.7 소화장비(소화기)는 월 1회이상 점검하고 작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11.8 가스용기 취급시 방폭공구와 방폭전기자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.
- 11.9 기름 묻은 손이나 장갑을 끼고 가스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.
- 11.10 가스용기 저장소 입구에 관리하고 있는 용기의 종류,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관리책임자(정, 부)의 비상연락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11.11 가스등의 용기는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,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,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에 설치·저장·방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.
- 11.1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℃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11.13 가스용기는 용기외부에 표기된 충전기한 이내로 사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# 12. 액화천연가스(LNG) 취급 안전수칙

- 12.1 LNG의 주성분은 메탄(CH₄ 85 ~ 95%)으로 가스 흡입시 질식하므로
- 12.1.1 즉시 신선한 공기 호흡 및 기도, 혈압유지하고
- 12.1.2 환자를 안정시켜 즉시, 병원으로 후송조치 한다.
- 12.2 무색, 무취의 초저온 액체(-162℃)로 피부와 눈에 접촉시 심한 자극을 유발(경련, 쇼크, 구토, 혼수상태 등)시키므로
- 12.2.1 접촉 즉시 온수(41 ~ 46℃)로 15분 ~ 20분 정도 씻고
- 12.2.2 환자를 안정시키고 따뜻하게 하여 (급격하게 뜨겁게 하지 말아야 한다.)
- 12.2.3 빠른 시간 내에 의사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.
- 12.3 피부접촉시에는 심한 동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
- 12.3.1 동상부위를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옷을 벗기고
- 12.3.2 온수(41 ~ 46℃)에 환부를 담근다.
- 12.3.3 온풍사용을 절대금지하고 더워지기 전, 후 동상부위를 긁지 말아야한다.
- 12.3.4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한다.
- 12.4 발화성 가스(폭발범위 5~15%)로 기화시 부피는 액화상태의 부피보다 약 600배 팽창하므로 모든 발화원으로부터 피해야 한다.
- 12.5 작업자는 개인보호구(PPE)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.
- 12.5.1 눈 보호 : 안면가리개 또는 분진방지용 고글형 보안경
- 12.5.2 보호의 : 불침투성 보호의 및 방열복
- 12.5.3 손 : 방한 보호 장갑
- 12.5.4 호흡용 보호구 : 공기공급식 공기호흡기

# 13. 위험물 취급(보관)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## 13.1 용어 정의

- 13.1.1 위험물 : 상온 상압에서 대기중의 산소, 물, 기타 다른 물질과 격렬히 반응하거나 외부 점화원 등에 의해 짧은 시간에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 시켜 화재 및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자체로는 연소성이 없으나 가연성 물질과 함께 반응할 경우 산소를 방출하여 연소속도를 현저히 증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.
- 13.1.2 유해물질 :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.

## 13.2 위험물 취급

- 13.2.1 위험물 취급전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내용을 숙지하고, 물질 안전보건자료(MSDS)를 취급(보관)장소에 비치·게시 한다.
- 13.2.2 위험물 취급시에는 절대로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13.2.3 취급관계자는 허가된 물량만 취급하고 허가된 위험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급, 보관한다.
- 13.2.4 위험물 취급전 소방설비와 소화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, 경보설비 및 소방장비의 조작방법을 숙지한다.
- 13.2.5 취급 후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보관소는 항시 정리정돈하고 폐기물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매일 처리한다.
- 13.2.6 폭발성 물질,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·마찰·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13.2.7 산화성 액체, 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 거나 가열·마찰·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13.2.8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 거나 주입·가열·증발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13.2.9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 거나 압축·가열·주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13.2.10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를 해서는 안된다.
- 13.2.11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.

# 14. 위험기계·기구 취급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 14.1 호이스트 안전수칙

- 14.1.1 사용하기전 안전장치(권과·과부하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, 후크해지 장치) 의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.
- 14.1.2 호이스트의 최대 사용하중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.
- 14.1.3 후크 블록에 작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최대 사용하중을 표기한다.
- 14.1.4 권과방지장치 또는 과부하방지장치가 동작하면 화물을 내려야 한다.
- 14.1.5 수리, 점검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하며 전원 및 조작버튼 등에 조작금 지 표시를 한다.
- 14.1.6 권상(상승)시 화물을 후크 중심에 두고 운전한다.
- 14.1.7 주행, 횡행 운전시 급격한 이동을 하지 않는다.
- 14.1.8 와이어 로프상태를 사용전 1회이상 점검한다.

#### 14.2 공기압축기 안전수칙

- 14.2.1 기계작동에 앞서 오일레벨을 점검하며 오일레벨이 낮을 때에는 필요 량을 보충한다.
- 14.2.2 하루에 한 번씩 공기탱크에 고여있는 응축수를 제거한다. 단, 습기가 많을 때는 횟수를 늘인다.
- 14.2.3 공기압축기가 적절히 냉각되고 있는지 자주 냉각수 온도를 점검하고 냉각수 순환이 잘 되도록 주의한다.
- 14.2.4 공기압축기가 혹한 또는 빙점 이하로 가동될 경우는 냉각수에 부동액을 첨가하거나 또는 전부 배출시켜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한다.
- 14.2.5 금속물체는 전기배선, 터미널 및 전선 등에 접촉될 경우에 전기쇼크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기에 접지조치 및 회전체 부위에는 방호울 등을 부 착하고 주의하여 취급한다.
- 14.2.6 고온장소에 설치해서 고온공기를 흡입하여 연속운전한 후 장기간 드레인을 하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의 염려가 있으므로 드레인 방출, 오일 및 운전시간의 관리 흡입공기온도 등에 주의한다.
- 14.2.7 분해, 보수 시에는 전원 등을 차단 및 시건조치를 하고, 공기압축기, 공기탱크 및 관로 안의 압축공기를 완전히 배출한 뒤에 실시한다.
- 14.2.8 압축공기는 인명에 심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압축공기로 장난을 하지 않는다.

# 14.3. 드릴링 머신작업 안전수칙

14.3.1 회전하고 있는 주축이나 드릴에 손이나 걸레, 머리 등이 닿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한다.

- 14.3.2 드릴을 사용전에 점검하고 상처나 균열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.
- 14.3.3 가공중에 드릴의 절삭분이 불량해지고 이상음이 발생하면 중지하고 즉시 드릴날을 바꾼다.
- 14.3.4 드릴의 착탈은 회전이 멈춘 다음 행한다.
- 14.3.5 작은 물건은 바이스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장착하고 직접 손으로 지지하는 것을 피한다.
- 14.3.6 가공중 드릴이 깊이 먹어 들어가면 기계를 멈추고 손 돌리기로 드릴을 뽑아낸다.
- 14.3.7 드릴이나 소켓을 뽑을 때는 공구를 사용하고 해머 등으로 두들겨서는 안 된다.
- 14.3.8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은 작업 중 컬럼(column)과 암(arm)을 확실하게 체결하여 암을 선회시킬 때 주위에 조심하고 정지 시에는 암을 베이스의 중심 위치에 놓는다.
- 14.3.9 가공물을 유동되지 않도록 가공물을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.
- 14.3.10 장갑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14.3.11 작은 가공물이라도 가공물을 손으로 고정시키고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.
- 14.3.12 가공물이 관통될 즈음에는 알맞게 힘을 가하여야 한다.
- 14.3.13 드릴 끝이 가공물을 관통 하였는가 손으로 확인하여서는 안 된다.
- 14.3.14 가공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드릴 날에 손이나 가공물이 접촉되지 않 도록 드릴을 안전한 위치에 올려 두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14.3.15 드릴 회전 중 칩 제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엄금해야 한다.
- 14.3.16 주물 소재 칩은 해머나 입으로 불어서 제거하면 안 된다.
- 14.3.17 드릴은 척에 고정시킬 때 유동이 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.
- 14.3.18 천공 작업시에는 가공물의 반대쪽을 확인하여 작업하여야 한다.
- 14.3.19 가공작업 중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기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14.3.20 이동식 드릴의 코드 접속은 빠지지 않도록 하고 절연되도록 한다.
- 14.3.21 이동식 드릴 등 전원케이블이 보행통로를 가로지르는 경우 전원케이블에 보호덮개를 하여야 한다.
- 14.3.22 이동식 드릴 작업이 공동작업인 경우 서로 연락, 신호 등에 차질이 없도록 호흡을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.

# 14.4 열유 보일러작업 안전수칙

- 14.4.1 담당자 이외에는 조작을 금지한다.
- 14.4.2 기계·설비 가동 중에 수리, 보수를 금지한다.
- 14.4.3 가동전 오일. 버너. 펌프 등의 상태를 사전 점검한다.
- 14.4.4 보일러 주변은 청결을 유지한다.
- 14.4.5 고장난 기계는 "사용금지" 표지를 부착한다.
- 14.4.6 배관 및 접속부의 누유여부를 1일 3회 점검한다.
- 14.4.7 각종 밸브에는 개폐표지를 부착하여 오조작을 사전 예방한다.

# 14.5 전동. 지게차작업 안전수칙

14.5.1 지정된 운전자(면허소지자) 외에는 운전을 하지 않으며, 운전 종료 시에는 키(Key)를 분리하여 보관한다.

- 14.5.2 운전자 외에는 차량탑승을 금지하며,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다.
- 14.5.3 운전중에는 포크를 10 ~ 30cm 높이로 유지하고, 과속 및 급회전 등을 하지 않는다.
- 14.5.4 후진시에는 뒤를 살피면서 서행한다.
- 14.5.5 차량에는 전조등, 후미등 및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14.5.6 화물의 폭에 따라 포크 간격을 조절해야 하며 무게중심을 중앙에 위치하여 운반한다.
- 14.5.7 운행시 물체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면서 운전한다.
- 14.5.8 사람이 왕래하는 통로나 출입구에서는 경적을 2-3회 울리고, 좌.우를 살피면서 서행한다.
- 14.5.9 화물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으며, 전방 눈높이 이하로 적재한다.
- 14.5.10 차량의 이상발생 시에는 타인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보수를 요청한다.
- 14.5.11 포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는다.

# 14.6 콘베이어작업 안전수칙

- 14.6.1 콘베이어 운반속도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는다.
- 14.6.2 운전중인 콘베이어에 탑승하지 않는다.
- 14.6.3 운전중인 콘베이어 하부 및 상부로 통행하지 않는다.
- 14.6.4 화물을 싣기 전에 크기를 확인한다.
- 14.6.5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한다.
- 14.6.6 화물 낙하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적재한다.
- 14.6.7 화물운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14.6.8 콘베이어는 지정된 담당자이외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.

## 14.7. 치공구 안전수칙

- 14.7.1 치공구는 취급상 안전장치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.
- 14.7.2 치공구는 사용 후 청소를 하고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.
- 14.7.3 끝이 날카로운 치공구는 덮개나 칼집에 넣어서 휴대. 이동한다.
- 14.7.4 파편이 튈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보호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14.7.5 치공구는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.

# 14.8 연삭기작업(연마작업) 안전수칙

- 14.8.1 연삭숫돌은 조심하여 취급하고 설치전에 반드시 손상유무를 점검하며, 사용전 1분 이상, 연삭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공회전하여야 한다.
- 14.8.2 연삭숫돌은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.
- 14.8.3 연삭숫돌은 규격에 맞는 크기의 것을 규정 속도로 사용한다.
- 14.8.4 안전덮개가 반드시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한다.
- 14.8.5 공작물의 설치·해체시에는 연삭숫돌에 닿지 않도록 한다.
- 14.8.6 공작물은 확실하게 고정하고 작업 중에 고정을 풀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.
- 14.8.7 연삭압력이나 절단속도를 최대로 하는 등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.
- 14.8.8 연삭액은 적절한 것을 사용하고 연삭액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도록 한다.
- 14.8.9 연삭액의 사용배율을 적절히 유지한다.

14.8.10 연삭숫돌마다 국소배기장치(레식버식)를 설치하고 작업 중에는 항상 가동하여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- 14.8.11 덮개를 제거한 후 작업하지 않는다.
- 14.8.12 숫돌은 측면용의 것을 제외하고는 지정된 면을 사용하여 작업한다.
- 14.8.13 숫돌은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수분이나 습기에 주의하며, 안전한 선반·상자·서랍 등에 보관한다.
- 14.8.14 숫돌은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취급시 주의하여야 하며, 떨어뜨리거나 부딪치지 않도록 한다.
- 14.8.15 연마작업시 칩이나 잔재물이 비산 되지 않도록 한다.
- 14.8.16 연마작업시 보안경·방진마스크·귀마개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
- 14.8.17 숫돌은 기계동력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.
- 14.8.18 폭발 및 발화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금하며,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시행 할 때는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차폐판을 설치 하고 작업한다.
- 14.8.19 탁상식 연삭기의 작업받침대는 연삭숫돌의 면과 3mm 이내로 조절하여 사용한다.

## 14.9 진동공구작업 안전수칙

- 14.9.1 진동이 손잡이로 전파되지 않는 공구를 사용한다.
- 14.9.2 진동공구는 가능한 공구의 기계적 힘을 이용하여 지지토록 한다.
- 14.9.3 진동공구의 손잡이는 너무 세게 잡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반복훈련을 실시한다.
- 14.9.4 작업장내의 온도가 14°이하이면 보온대책을 강구한다.
- 14.9.5 1회 연속 진동 작업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작업시간을 최소화한다.
- 14.9.6 소음이 발생되는 진동 작업 시에는 청력보호구를 착용한다.
- 14.9.7 진동 작업시에는 진동방지장갑을 착용하여 진동폭로를 감소시킨다.
- 14.9.8 착암기 등 진동공구 취급근로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 진단을 받도록 한다.

## 14.10 이동식 크레인 안전수칙

14.10.1 이동식 크레인의 진입로를 확보하고, 작업 장소 지반(바닥)의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.

- 14.10.2 아웃트리거 설치 시 지지력을 확인한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여야 하고, 미끄럼 방지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받침이나 매트 등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, 크레인의 수평도를 확인하고,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위치의 지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14.10.3 작업 장소 주변의 인양작업에 간섭될 수 있는 장애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,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·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14.10.4 인양물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준수하고, 수직으로 인양하여야 하며, 인양작업 시 인양 반경을 최소화하여 전도 및 낙하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14.10.5 작업 시작 전에 비상정지장치, 권과방지장치나 경보장치, 브레이크, 클러치 및 조정장치,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을 점 검하여야 한다.
- 14.10.6 크레인 인양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, 운전원과 신호수가 상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14.10.7 이동식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14.10.8 인양작업 중 슬링(와이어로프, 섬유벨트 등), 훅 및 해지장치, 샤클 등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.
- 14.10.9 인양물의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물을 유도하기 위한 2개 이상의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14.10.10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14.10.11 운전원은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며, 장비를 떠나야 할 경우는 인양물을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고, 구동 엔진 정지 및 브레이크를 작동 상태로 하여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.
- 14.10.12 작업 종료 시에는 줄걸이 용구를 분리하여 보관하고, 훅은 최대한 감아올려야 한다.

## 14.11 고소작업대 안전수칙

- 14.11.1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 - (1)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: 화물자동차에 지브로 작업대를 연결한 형태로서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(본체)의 운전석 안에 있는 고소 작업대

- (2) 시저형 고소작업대 : 작업대가 시저장치에 의해서 수직으로 승 강하는 형태
- (3) 자주식 고소작업대: 작업대를 연결하는 지브가 굴절되는 형태
- 14.11.2 작업 전에 작업의 경로 및 방법, 지면 상태 및 비상정지장치, 권과 방지장치나 경보장치, 브레이크, 클러치 및 조정장치, 와이어로프 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14.11.3 작업대 측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로 발끝막이판 등을 설치하여 작업공구 및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14.11.4 작업구역 내에 관계근로자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14.11.5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지지력 확보를 위한 조치 후에 받침판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14.11.6 고소작업대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도를 확인하고, 아웃트리 거를 설치한 위치의 지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14.11.7 고소작업대 작업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장내 적정 조도(75Lux이 상)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14.11.8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14.11.9 작업 장소 주변에 간섭될 수 있는 장애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,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·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14.11.10 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에 근로자는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, 안전대 부착설비는 작업대 이외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
\_14.11.11 고소작업대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.

- 14.11.12 비, 눈,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(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 지) 또는 제383조(작업의 제한) 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.
- 14.11.13 탑승 후에 출입문을 고정하고, 작업 중에 작업대의 안전난간 해체를 금지하며,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대 상부 안전난간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.
- 14.11.14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작업시 불티의 비산방지조치,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, 하부에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14.11.15 고소작업대의 이동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하여야 하며, 작업대가 상승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짧은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.
- 14.11.16 작업이 종료되면 기동 스위치를 끄고, 키(Key)를 분리하여 보관한다.
- 14.11.17 비탈면은 고임목을 설치하고,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제동하여야 한다.

## 15. 유기용제 취급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# 15.1 유기용제란 ?

물질을 녹이는 액체인 휘발유나 벤젠 등의 화학물질을 말하며, 기계가 정밀화됨에 따라 기계를 보존하기 위한 세척제로도 사용된다.

- 15.2 유기용제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하며, 취급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비치·게시 한다.
- 15.3 유기용제가 갑자기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을 물로 씻는다.
- 15.4 공구류는 불꽃에 튀지 않는 방폭공구를 사용한다.
- 15.5 공구류에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설비장치에 접지를 한다.
- 15.6 유기용제 취급 작업자는 작업 전 취급상의 주의 또는 경고표지를 반드시 읽어보고 작업에 임한다.
- 15.7 유기용제가 피부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 침투성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복. 장갑. 양말 등의 청결을 유지한다.
- 15.8 유기용제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유기용제 작업을 할 때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.
- 15.9 유기용제 작업을 할 때는 탱크, 갱 기타 옥내 작업장내 공기중의 유기 용제 농도를 측정한다.
- 15.10 작업장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한다.
- 15.11 유기용제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검진결과 의사소견에 따라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사후조치에 따르도록 한다.

## ★ Check Point

- 유기용제 중독에 의해 건강장애를 입을 수 있다.
- 유기용제는 가연성과 휘발성이 있어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.

## 16. 도장작업 안전수칙

- 16.1 표면처리시 사용되는 공구는 사용 전에 점검하고 용도에 알맞게 사용한다.
- 16.2 고소작업시에는 사다리, 안전대 등을 사용하여 추락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한다.
- 16.3 도장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공구는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의 공구를 사용하도록 한다.
- 16.4 실내 도장작업시에는 항상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작업한다.
- 16.5 도장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사용 또는 화기작업 병행을 엄금한다.
- 16.6 작업시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, 보안경, 안전장갑 등을 착용한다.
- 16.7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시는 산소 및 가연성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한다.
- 16.8 도장설비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구를 사용하고,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에게 의뢰한다.
- 16.9 작업장내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취식을 금한다.
- 16.10 작업후에는 세척 및 목욕을 실시한다.

# 17. 화약류 관리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# 17.1 화학류란 ?

폭발반응이 사용 또는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폭발물의 총칭이다. 법규에는 화약, 폭약 화공품으로 나누지만, 일반적으로 화약이라 하면 화약류를 말하게 된다.

- 17.2 화약류 관리자는 유자격자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17.3 화약류의 운반, 취급, 저장, 사용은 선임된 유자격자가 하여야 한다.
- 17.4 화약류는 간이 저장소를 설치해 저장하여야 한다.
- 17.5 화약류 저장소의 시건장치는 이중으로 하여야 한다.
- 17.6 가연성 물질 또는 위험물 저장소는 화약류 저장소와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17.7 화약류 저장소내 바닥은 목재로서 지면에서 30㎝ 이상 이격하여야한다.
- 17.8 화약류의 수불, 사용대장은 철저히 작성하여야 한다.
- 17.9 화약류 저장소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17.10 화약류 저장소에는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17.11 화약과 뇌관은 별도의 용기에 분리, 보관하여야 한다.

## 18. 토목 작업관리 안전수칙

- 18.1 터파기 지반은 도로 및 지반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굴삭면의 구배와 높이가 안전한가 확인한다.
- 18.2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을 실시하고 필요시 토류판 등을 설치하여 토사붕괴를 방지한다.
- 18.3 건설기계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유도원을 배치하여 차량 출입 및 통제를 실시한다.
- 18.4 터파기 작업시 가스, 케이블, 상·하수도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장물을 조사한다.
- 18.5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비산이 발생하는 현장주변에는 비산먼지 방진막을 설치한다.
- 18.6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위한 레미콘트럭 및 펌프차의 현장출입시 보행자 보호를 우선한다.
- 18.7 전기, 기계시설의 자재취급시 고압선 접촉에 주의하여 감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.
- 18.8 감전예방을 위해 전기, 기계시설의 접지를 확인한다.
- 18.9 작업장 아래에서 작업을 하거나 그것을 통과하는 곳에는 낙하 또는 비래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망을 설치한다.

## 19. 건축 작업관리 안전수칙

- 19.1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낙하물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며, 시공상의 변형 방지를 위해서는 기둥, 보, 벽체 거푸집에 널재와 버팀목을 확인한다.
- 19.2 조립, 해체는 작업반장의 지휘하에 행하고 악천후에는 작업 중지한다.
- 19.3 석공사 및 미장공사 시 근로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비계의 발판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업 반경내의 출입을 금지시킨다.
- 19.4 추락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창문, 유리 공사의 외부작업시에 작업자는 추락방지용 전신 하니스(Full body harness)를 착용한다.
- 19.5 도장 공사중에는 금연과 화기엄금을 지키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접착성, 인화성, 휘발성물질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19.6 계단, 고가로, 작업대, 발판 등에는 빙설, 기름, 진흙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9.7 고소작업의 모든 비계발판 및 작업대에는 보호난간 및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며, 작업자는 반드시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추락방지용 전신 하니스 (Full body harness)를 착용하고 걸고리에 걸어서 작업한다.
- 19.8 2층 이상의 건물공사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계단과 난간을 설치한다.
- 19.9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비계 및 탑은 하중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19.10 금속제 비계를 사용할 때에는 전기감전에 유의하며 금속비계 및 탑의 조직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붕괴의 위험을 예방한다.
- 19.11 접속부 및 발판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고정시킨다.
- 19.12 비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자가 탄 채로 이동하지 않는다.

## 20. 작업 공통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# 20.1 사무실 내 안전회의

- 20.1.1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- 20.1.2 작업허가서, 작업안전분석(JSA)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, 작업절차서 등 현장에 비치할 서류를 확인한다.
- 20.1.3 관리감독자는 위험작업인 경우 예상되는 안전 위해요인을 작업참여 전원에게 주지시킨다.
- 20.1.4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 및 개인보호구(PPE), 공기구, 기자재 준비상 태를 점검한다.

## 20.2 현장 작업전 안전수칙

- 20.2.1 현장 도착 후 실질적인 작업 전 안전회의(TBM)를 실시한다.
  - (1) 작업안전분석(JSA)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등의 안전작업요건 숙지 및 확인
  - (2) Lock Out(시건장치), Tag Out(안전 표지) 등의 조치사항 점검 및 확인
- 20.2.2 작업책임자는 작업전 5분간 현장의 설비계통 운영상태 등 작업환경 조건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공유한다.
- 20.2.3 일반 및 위험작업 등 허가대상 작업은 작업수행 전 현장에 승인된 작업허가서, 작업전 안전회의록(TBM), 작업안전분석표(JSA)등을 반드시 비치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20.2.4 1인 단독작업은 지양하고, 1인 단독작업시 반드시 파트장 또는 부 (팀)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20.3 현장 작업중 안전수칙

- 20.3.1 TBM 시 도출된 위험포인트에 주의하여 작업한다.
- 20.3.2 중식 등으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이탈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20.3.3 표준정비작업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을 실시한다.

20.3.4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 중지 후 관리감독자 지시에 따른다.

개정 : 2020.12.17

- 20.3.5 위험작업 수행시 관리감독자(작업책임자)는 작업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.
- 20.3.6 기억의존 탈피 : 작업 중 불확실한 사안이나 특이사항 발생시 관련절차 또는 규정을 확인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 후 정확한 절차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20.3.7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작업중에 작업절차 준수 여부 및 종료 후 계통 정상화 전에 이상유무를 확인한다.

## 20.4 현장 작업 후 안전수칙

- 20.4.1 작업완료 후 작업전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작업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을시 작업을 종결한다.
- 20.4.2 작업완료 상태에 대한 공급관리자 확인을 요청한다.
- 20.4.3 공기구, 기자재 등 현장 정리정돈을 실시한다.

#### 20.5 기타 준수사항

- 20.5.1 작업전,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개인보호구(PPE), 작업지시사항, 안전 준수사항 등이 조치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20.5.2 구두로 지시한 작업이라도 사전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,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.
- 20.5.3 관리감독자는 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 및 규정 준수(안전표지, 안전수칙 등),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 또는 확인한다.
- 20.5.4 작업전 및 작업중에 회사의 안전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중독성 약물 복용 및 음주를 금지한다.

# 21. 굴착공사 현장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# 21.1 일반요건

- 21.1.1 굴착지역에 대한 도면을 검토하여 공정 배관이나 전선 등과 같은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.
- 21.1.2 굴착공사 현장(시험굴착 현장 포함)에 매설배관 확인시에 입회작업 감독 및 중장비 운전원 등과 합동으로 작업 안전사항을 상호협의 후 작업을 실시한다.
- 21.1.3 현장입회 요청시 현장 환경(토질. 경사면 기울기, 지하매설물, 기후 등)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부서장에게 구두보고 한다.
- 21.1.4 작업시작전 점검(작업장 및 그 주변의 부식·균열의 유, 무, 함수·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, 굴착면의 기울기)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토질·형상 등에 따른 다짐. 점토 등 토사붕괴 예방조치를 취한 후 입회 확인한다.
- 21.1.5 리프팅 장비, 굴착기 등 공사장비 밑으로는 직원의 출입을 금한다.
- 21.1.6 공사장비가 굴착지에 인접하여 운전 중일 경우 바리케이트, 수신호 및 기계 신호와 같은 경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변의 교통을 통제 하여야 한다.
- 21.1.7 굴착공사로 인하여 인근건물이나 벽, 보도 포장도로 및 기타 구조물의 안정성에 위험이 가해지는 경우 버팀목과 브래싱 지지대를 설치하여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.
- 21.1.8 모든 굴착지는 방벽(휀스)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
- 21.1.9 작업계획서를 미리 작성,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.
- 21.1.10 굴착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는 안전모,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.

## 21.2 굴착지 출입

21.2.1 길이가 1.5m 이상 되는 굴착지나 일부분이 1.5m 이상 되는 곳은 밀폐 공간출입 안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- 21.2.2 굴착지 깊이가 1.5m 이상일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고려하여 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토류 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21.2.3 굴착면의 구배가 확보되지 않는 장소에서 입회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1.2.4 안전한 굴착면이 확보되지 않는 굴착사면 아래에는 토사 붕괴시 중대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 등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21.2.5 붕괴위험이 있는 지반을 굴착할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하게 하여야 하나 부득이 굴착면의 기울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여 지반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.
- 21.2.6 깊이 1.5m 이상 되는 트렌치 굴착지에는 수평으로 7.5m마다 계단, 사다리, 경사로 또는 기타 굴착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.
- 21.2.7 굴착지역에 유해가스가 증가할 경우 호흡장비, 구명줄, 멜빵, 들것 등의 비상 구조장비을 비치하여 유사시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- 21.2.8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용수가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굴착작업을 할 수 없다.
- 21.2.9 작업감독자는 매일 굴착지를 점검하여 보호시스템의 기능 및 낙반의 위험 등을 확인한다.

## 21.3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

구 분	지반의 종류	구 배
보통 흙	습 지	1:1~1:1.5
工方司	건 지	1:0.5~1:1
	풍 화 암	1:0.8
암 반	연 암	1: 0.5
	경 암	1: 0.3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(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자) 제1항 관련 구배기준[별표 11(굴착면의 기울기 기준)]을 준용한다.

# 22. 공작동 내 작업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# 22.1 밀링작업 안전수칙

- 22.1.1 회전중 가공물을 조여서는 아니 된다.
- 22.1.2 회전중 옷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22.1.3 시동전 기계의 각부를 점검한다.
- 22.1.4 레버나 핸들의 작동을 확인한다.
- 22.1.5 각 스위치의 작동을 확인한다.
- 22.1.6 복장은 단정한 작업복을 착용한다.
- 22.1.7 주유부에 적당량을 급유한다.
- 22.1.8 장갑은 절대 끼지 않는다.
- 22.1.9 칩의 제거는 반드시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하며, 솔을 사용한다.
- 22.1.10 정면 커터 사용 중에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한다.
- 22.1.11 기계 가동중에는 변속 시키지 않는다.
- 22.1.12 방호장치를 설치하고, 작업전 방호장치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.

## 22.2 선반 작업 수칙

- 22.2.1 작동전 기계의 모든 상태를 점검한다.
- 22.2.2 절삭 작업중에는 보호 안경을 착용한다.
- 22.2.3 바이트는 가급적 짧고 단단히 조인다.
- 22.2.4 가공물이나 척에 휘말리지 않도록 작업자는 옷소매를 단정히 한다.
- 22.2.5 작업중에 칩이 많아 처리할 때에는 기계를 멈춘 다음에 한다.
- 22.2.6 긴 물체를 가공할 때는 반드시 방진구를 사용한다.
- 22.2.7 칩을 제거할 때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말고 브러쉬를 사용한다.
- 22.2.8 방호장치를 설치하고, 작업전 방호장치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.

#### 22.3 드릴 작업 수칙

- 22.3.1 시동전에 드릴이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.
- 22.3.2 장갑을 끼고 작업하지 않는다.
- 22.3.3 드릴을 회전시킨 후 테이블을 고정하지 않도록 한다.
- 22.3.4 드릴 회전중에는 칩을 입으로 불거나 손으로 털지 않도록 한다.
- 22.3.5 큰 구멍은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뚫도록 한다.

22.3.6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나무판을 밑에 받치고 뚫도록 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- 22.3.7 이송 레바에 파이프를 걸고 무리하게 돌리지 않는다.
- 22.3.8 전기드릴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접지하도록 한다.
- 22.3.9 방호장치를 설치하고, 작업전 방호장치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.

## 22.4 크레인 작업 수칙

- 22.4.1 모든 동작은 구분하여 운전한다.
- 22.4.2 규정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.
- 22.4.3 좌우 이동시 급정지 하지 않는다.
- 22.4.4 크레인 직하에서 작업하지 않으며 안전장구를 착용한다.
- 22.4.5 작업자는 작업전 와이어로프, 후크, 브레이크 안전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 후 운전한다.
- 22.4.6 동작중 이상이 있을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관계부서의 조치를 받는다.
- 22.4.7 운전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.
- 22.4.8 갈고리 및 매달기 기구는 확실히 장착하여야 한다.
- 22.4.9 와이어로프 및 기계 기구는 확실히 장착하여야 한다.

## 22.5 호이스트 안전수칙

- 22.5.1 사용하기전 안전장치의 동작 유무를 확인한다.
- 22.5.2 호이스트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.
- 22.5.3 비상스위치 동작 유. 무를 확인한다.
- 22.5.4 과부하 방지 장치가 동작하면 화물을 내려야 한다.
- 22.5.5 수리, 점검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하며 조작금지 표시를 한다.
- 22.5.6 권상(상승)시 화물을 후크 중심에 두고 운전한다.
- 22.5.7 주행, 횡행 운전시 급격한 이동을 하지 않는다.
- 22.5.8 와이어 로프상태를 1일 1회 점검한다.

# 23. 작업용 가스 사용자 안전수칙

- 23.1 가스누설 검지액으로 가스가 누설되는 곳을 수시로 확인하고, 항시 냄새 로서 누설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23.2 접속 부분에는 반드시 호스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23.3 연소기구의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.
- 23.4 바람으로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23.5 고무호스의 노후나 훼손된 곳이 없는지 항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23.6 밸브는 서서히 열고 잠그도록 하여야 한다.
- 23.7 가스의 사용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밸브를 잠그도록 하여야 한다.
- 23.8 빈 용기의 밸브는 완전히 잠그고 캡을 씌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23.9 용기에 무리한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23.10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23.11 사용시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 할 것
- 23.12 용기의 부식·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

# 24. 유해물질 취급 안전수칙

- 24.1 유해물질 취급전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내용을 숙지하고, 물질 안전보건자료(MSDS)를 취급(보관)장소에 비치·게시 한다.
- 24.2 유해물질은 소정의 장소,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24.3 유해물질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.
- 24.4 취급관계자 이외에는 작업장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24.5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, 취식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24.6 작업후 식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.
- 24.7 작업전 해당 작업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및 위험요소 분석을 통한 보호구(방독마스크, 고무앞치마, 장갑 등)나 방호장치 등을 정확히 사용 하여야 한다.
- 24.8 작업장의 통풍 및 환기를 하여야 한다.
- 24.9 신체에 이상(두통, 복통, 설사)을 느끼면 곧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.
- 24.10 강한 산이나 알칼리류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보호구(방독마스크, 방독면, 장갑, 안전화 등)를 착용하여야 한다.

# 25. 도로부 점검 안전수칙

- 25.1 도로부 점검자는 개인보호구(안전화, 안전모, 작업복 등)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.
- 25.2 도로부 점검자는 배관 상부가 잘 보이는 도로 갓 길로 이동하여야 한다.
- 25.3 도보부 점검자 보호를 위해 관로검사 차량은 비상 점멸등을 켜고 10m 후미에서 점검자를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.
- 25.4 점검자 및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25.5 도로부 점검은 무리하게 많은 거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.
- 25.6 기온이 30℃ 이상일 때에는 도로부 점검을 하지 않도록 한다.
- 25.7 산악지역 및 수목, 잡초 등이 무성한 곳을 점검시는 뱀과 벌 등에 의한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대 등을 이용하여 앞쪽을 두드려 가면서 이동하여야 한다.
- 25.8 진드기 물림, 유행성 출혈열 등의 예방을 위해 작업복, 장갑, 토시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, 점검 후 손을 잘 씻고, 작업복은 털어내야 한다.

# 26. 고속절단기 작업 안전수칙

개정 : 2020.12.17

## 26.1 작업장소

- 26.1.1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고 밝게 하여야 한다.
- 26.1.2 가연성 액체, 기체 혹은 분진과 같은 폭발성 환경에서는 사용을 금한다.
- 26.1.3 전동공구로 작업할 때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## 26.2 전기적 안전

- 26.2.1 플러그는 콘센트와 잘 맞아야 하며, 플러그를 변형하지 말아야 한다.
- 26.2.2 전원코드 손상 시 감전의 원인이 되므로, 전원코드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하며, 전동공구를 운반하거나, 끌어당기거나,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 코드를 잡아당기지 말아야 한다.
- 26.2.3 기기에 접지조치를 하여 누전 등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.

## 26.3 사용자 안전

- 26.3.1 작업하는 동안 작업부를 주시하면서 주의하여 작업하고,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는 상식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며, 피곤하거나 약물복용이나음주 후에는 사용을 금한다.
- 26.3.2 안전보호구를 사용하고, 보안경은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.
- 26.3.3 갑작스럽게 작동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, 전동공구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는 스위치가 꺼진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26.3.4 전동공구를 사용하기 전 조절용 도구(렌치. 키 등) 제거 상태를 확인한다.
- 26.3.5 무리한 작업은 피하고, 항상 적절한 균형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.

## 26.4 전동공구 사용과 관리

- 26.4.1 무리한 힘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고.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- 26.4.2 전동공구의 스위치가 고장 났을 때는 사용을 금한다.
- 26.4.3 점검하거나 소모품을 교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.

26.4.4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후, 숙련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개정 : 2020.12.17

- 26.4.5 전동공구 사용 전에는 작동부의 조임과 정돈상태, 부품의 손상 등 관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여야 한다.
- 26.4.6 전동공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리해야 하며, 계양 순정 부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26.4.7 고속절단기 등 전동공구 구매시 포함된 매뉴얼을 숙지 및 보관하고, 제작사의 매뉴얼에 따라 알맞은 숫돌을 사용하여야 한다.

## 26.5 고속절단기 안전수칙

- 26.5.1 작업 중 보호구(귀마개, 보안경)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26.5.2 설치 전에 손상 가능한 절단용 숫돌에 대하여 점검하며, 절단용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공회전하여야 한다.
- 26.5.3 절단용 숫돌은 반드시 방호덮개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26.5.4 절단작업 시 절단용 숫돌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.
- 26.5.5 사용 전 절단숫돌을 1분 이상 공회전 상태를 점검하고 파손 및 균열간 숫돌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26.5.6 과도하게 고정너트를 조이지 않도록 숫돌을 고정한다.
- 26.5.7 절단용 숫돌 측면으로 절대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.
- 26.5.8 작동중일 때 절단용 숫돌 전면에 서 있지 않도록 한다.
- 26.5.9 적절한 환기없이 작업하지 않는다.
- 26.5.10 숫돌의 최고 사용 주속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.
- 26.5.11 절단작업시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꽃 비산 방지커버 등을 설치한다.

# 27. 방문객 안전수칙

- 27.1 방문객은 정문 경비실에서 출입등록 및 방문증을 패용한다.
  - ※ 안내에 따라 지정장소에서 담당자를 대기한다.
- 27.2 방문 차량은 이동시 30km/h이하 운행 및 지정 주차장에 주차한다.
  - ※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주·정차를 금지한다.
- 27.3 보행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, 뛰거나 난간 등에 매달리지 않는다.
- 27.4 승강기 사용 시 승강기 안전수칙을 준수한다.
- 27.5 건물 대피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고, 계단 등을 이용하여 대피한다.
  - ※ 대피유도자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집결 및 인원파악을 실시한다.
- 27.6 심정지 환자 목격 시 119등에 연락하고,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.
  - ※ 본사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는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옆에 비치한다.
- 27.7 건물 내에는 금연구역이므로 외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한다.
- 27.8 건물 내 모든 설비는 임의 조작 및 단독작업을 금지한다.
- 27.9 작업 전 관련부서의 승인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.
- 27.10 회사 내 전 지역에서는 상기 안전수칙을 준수한다.

# 개 정 이 력 사 항

(EHSQ 수칙관리 지침서)

	(2.10%    2.21   14.25   17.					
개정	기다저이TI	주 요 개 정 내 용	총 페이지			
개정   개정일자   차수	개성일자 		개정전	개정후		
1	2010.05.18	안전수칙관리 등을 현장여건에 맞게 작업유형 별로 구분, 개정	23	47		
2	2012.05.01	EHSQ 수칙관리 통합에 따른 전면 개정 ○ 안전수칙 → EHSQ 수칙관리 지침으로 확대 개정 ○ 용어정의, 자원과 정보, 업무절차, 모니터링 및 측정 등(기존 6항목 → 12항목 추가) ○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확화 ○ EHSQ 수칙 8개 추가반영 (기존 12개 → 변경 20개) ○ 각종 관련법규 및 고객요구 사항 반영	47	34		
3	2012.06.00	○ 기존 EHSQ 수칙관리 지침서에 작업 공동 안전 수칙사항 추가(사무실 내 안전회의, 현장작업 전, 중, 후 안전수칙, 기타 준수사항) ○ 현장여건에 맞게 각종 법규 등 고객요구사항 반영(전기작업 일반 안전수칙 표준문서 개정)	34	37		
4	2013.02.27	<ul> <li>○ 현장여건에 맞게 각종 법규 등 고객요구사항 반영(안전서약서 삭제)</li> <li>○ 굴착공사(시험굴착 포함) 안전수칙 개선 보완 (지반 굴착작업 시 굴착면의 안전구배 기준 설정 추가)</li> </ul>	37	38		
5	2013.07.03	○ 기존 EHSQ 수칙관리 지침서에 공작동내 일반 안전 수칙사항(밀링, 선반, 드릴, 크레인, 호이스트 안전수칙) 추가 ○ EHSQ 수칙 준수 서약서 작성 문구 추가	38	40		
6	2014.07.07	○ Lock Out, Tag Out 등의 점검 ○ 1인 단독작업 관리를 위한 현장 작업 전,중, 후 작업절차 강화 ○ 회사의 업무수행 시 중독성 약물 복용, 음주를 금하여 안전작업 수행	40	40		

I-1006 한국가스기술공사 A4(210×270mm)

# 개 정 이 력 사 항

(EHSQ 수칙관리 지침서)

(EHSQ 수직관리 시점서)				
개정 차수 개정일자	ᅰᄍᅁᄑ	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	총 페이지	
	개성일자		개정전	개정후
7	2015.10.02	○ 6.0 밀폐공간의 안전수칙 보완 - 산업안전보건기준 요건 반영 ○ 11.0 가스용기 저장(취급) 안전수칙 분리 및 보완 ○ 13.0 위험물 취급(보관) 안전수칙 분리 및 보완 ○ 25.0 도로부 점검 안전수칙 신설	40	44
8	2017.12.29	ㅇ 26. 고속절단기 작업 안전수칙 신설	44	46
9	2019.05.02	○ 직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안전품질처 등) ○ 3. 차량운행 안전수칙	46	47
10	2020.01.31	○ 삼척기지지사 감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별표1 : EHSQ 안전수칙_수·배전반 전기작업 안전수칙 변경 ○ 9.1_작업 전 - 작업책임자, 작업자 행동 내용 변경 - 작업 전 안전회의(TBM) 실시 명확화 ○ 9.2_작업 중 - 작업책임자, 작업장 행동 내용 변경 및 추가 ○ 9.3_작업 후 - 작업절차 내용 삭제, 작업 후 안전수칙 추가	47	48

I-1006 한국가스기술공사 A4(210×270mm)

# 개 정 이 력 사 항

(EHSQ 수칙관리 지침서)

(EHSQ 수칙관리 지침서)					
개정 차수	개정일자	주 요 개 정 내 용	총 페이지		
			개정전	개정후	
11	2020.12.17	별표 1 : EHSQ 안전수칙 개정  ○ KOAGS-Tech 10대 기본안전수칙 신설   - 추락방지, 개인보호구 착용 등 10대 수칙   신설  ○ 긴급자동차 운전기준 및 경광등 등의 사용   기준 명확화   - 긴급자동차 운전면허 및 교육 이수기준 추가   - 긴급자동차 운행시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  기준 명확화  ○ 중량물 등 작업시 줄걸이 작업기준 신설   - 달기기구 등의 안전기준 신설   - 와이어 로프 등의 사용 및 폐기기준 신설   ○ 이동식 크레인 안전수칙 신설   ○ 고소작업대 안전수칙 신설   ○ 작업별 안전기준 강화 및 일부 기준 신설	48	56	